

의안번호	2212170
의 퇴 인	백선희의원
회 답 일	2025. 9. 25.
추계번호	25B442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2(영업손실의 보전) 신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이하 “영업중단”이라 한다)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영업중단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영업중단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2(영업손실의 보전)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영업손실의 보전(안 제15조의2)

- 현행법은 2025년 4월 29일 제정되어 2025년 6월 30일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구제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표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피해지원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5	2026(안)
12·29 여객기사고 피해구제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추모사업 실시 등	－	1,333
12·29 여객기사고 피해지원	－ 추모행사 지원, 지원·추모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단 운영비 등	1,428	1,335

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참조

- 개정안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이하 “영업중단”)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규모, 손실 보전 기준 및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영업중단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은 영업중단 및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2025년 8월 기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피해자 중 자영업자는 76명으로 파악됨

[표 2]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피해자 현황('25.8월 기준)

(단위: 명)

합계	희생자	피해자	
		부상자	유가족 ¹⁾
			자영업자
954	179	2	773
			76

주: 1) 유가족 현황조사 용역('25.4~9월)을 통해 확인된 인원임
자료: 국토교통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